## 2020년 제10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

[1호 안건: 용현·학익 도시개발사업 공동1-1블록 공동주택 신축]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			심의일자	2020. 6.30.(서면심의)			
건축종별	[ ○ ]신축,	[ ] 증최	<u> </u>	[ ]대수선,	[ ]기타			
건축주 	성명(법인명) ㈜디씨알이							
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·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							
대지현황	지번 공동1-1블록		관련지번					
	대지면적 51,534㎡	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3종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		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7,835.68㎡		건폐율	₹ 15.2%	층수 지하 : 2층/ 지상 : 42층			
	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		구조	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8동			
	최고높이 118.21m		용적률	물 249.95%	연면적 합계 188,556.73㎡			
심의내용	구 분	심의결과						
	(계획분야)관련	○ 실내 체육관에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○ 커큐니티 센터 장애인 화장실을 복도쪽에 면하도록 배치 요망 ○ 어린이집 1층 일반화장실을 남, 여 구분하여 배치 요망 ○ 독서실 실내공간에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되도록 고려 요망 ○ 썬큰 지상부 위에 추락방지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 ○ 인접대지 경계선 측 보행통로는 공공보행통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-2블록과 함께 대지경계선 부위에 확보할 것						
		○ 추후 반영된 풍동실험 결과를 적용하여 본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람 ○ 내진설계 범주 D에 해당하는 동의 경우, 콘크리트 특수전단벽이나 혹은 성능설계 시 이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람						
	(소방분야)관련	O 지하주차장 환기설비는 화재시 연기배출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연휀(배기휀)은 내열성을 확보하여, 화재시 연기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						
	(행정)사항	O 사전검토의견 반영할 것						
심의결과	[ ] 원안 의결 [ ○ ] 조건부 의결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 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			

## 2020년 제8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

[2호 안건: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(구조)]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건축	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		심의일자	2020. 6.30.(서면심의)			
건축종별	[ ○ 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 ] 기타			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			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							
	지번 1452-2번지 일원		관련지번					
	대지면적 105,994.5㎡	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2종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		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16,213.82m²		건폐율	£ 15.3%	층수 지하 : 3층/ 지상 : 40층			
	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		구조	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22동			
	최고높이 115.15m		용적률	258.59%	연면적 합계 413,955.05㎡			
심의내용	구 분	심의결과						
	(구조분야)관련	○ 파일기초, 구조도면에서 102동 좌측 코아, 111동 우측 코아, 112동 좌측 코아의 ELEV피트 부분은 단면상세 작성해서 구조 설계자에게 확인받고, 파일 배치 검토 바람						
	(행정)사항	O 사전검토의견 반영할 것						
심의결과	[ ] 원안 의결 [ ○ ] 조건부 의결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 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 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			